#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3년 5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**1. 개정이유**

○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솔선수범토록 이장임무를 추가하여 마을리더로서 책임감을 키우는 한편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*2. 개정내용**

가. 이장의 임무(안 제2조)

· 이장의 임무 중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솔선수범토록 하여 마을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 부여

나. 사기진작(안 제5조)

· 각종 재난·재해 및 산불발생시 앞장서는 이장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·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쉽게 정비

**3. 참고사항**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: 별첨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3) 입법예고(2013. 4. 4 ~ 4. 23) : 별도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#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불 등 각종 재난·재해 발생 시 조사와 응급복구 참여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사기진작) ①군수는 군정 및 읍·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·외 연수와 교육훈련, 체육대회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(생 략) | 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,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| ②----------.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5. 산불 등 각종 재난·재해 발생 시 조사와 응급복구 참여 |
| 5. (생 략) |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|
| 제5조(교육훈련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, 교육훈련,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, 체육행사 그 밖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(2006.1.11 신설) | 제5조(사기진작) ①군수는 군정 및 읍·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·외 연수와 교육훈련, 체육대회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③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. |